어린이 생활건강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생활건강]

국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 18세 미만의 어린이의건강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의약품, 화장품 및 학교환경 등에 대해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이 콘텐츠는 어린이의 건강증진 및 질병보호 분야로 한정하여 의약품, 화장품, 감염병 및 학교환경 등에 대한 전반적인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어린이 생활건강 1
1. 어린이 건강관리 4
1.1. 어린이 감염병 예방 4
1.1.1. 어린이 예방접종 4
1.1.2. 감염병 조치방법 5
1.2. 어린이 건강검사 등 7
1.2.1. 6세 이상 어린이 건강검사 7
1.2.2. 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9
1.2.3. 어린이 치료비 지원 11
2. 어린이 의약품 15
2.1. 의약품 등의 확인방법 15
2.1.1. 의약품 확인방법 15
2.1.2. 의약외품 확인방법 17
2.2. 의약품 등의 안전용기 및 광고 19
2.2.1. 의약품 등의 안전용기 19
2.2.2. 의약품 등의 광고 20
3. 어린이 화장품 23
3.1. 화장품의 확인방법 등 23
3.1.1. 화장품 확인방법 23
3.1.2. 화장품 원료확인 25
3.2. 화장품 안전용기 및 광고 25
3.2.1. 화장품 안전용기 25
3.2.2. 화장품 광고 26
4. 어린이 학교환경 29
4.1. 학교의 위생 및 환경관리 29
4.1.1. 학교 환경위생 관리 29
4.1.2. 교육환경 보호구역 30

1. 어린이 건강관리

1.1. 어린이 감염병 예방

1.1.1. 어린이 예방접종

어린이의 개념

어린이의 연령 기준

▪ “어린이”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제3호 및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어린이 예방접종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이란 어린이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예방접종 서비스를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비용부담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출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정보 검색사이트-예방접종 길잡이-국가 예방접종 사업 소개-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의 지원대상 및 내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정보 검색사이트-예방접종 길잡이-국가 예방접종 사업 소개-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구분	내용	
지원대상	12세 이하 어린이	
지원내용	국가예방접종 지원백신의 예방접종비용 전액 지원	
지원백신	√ BCG(피내용) √ B형간염 √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 IPV(폴리오) √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 수두 √ 일본뇌염(불활성화백신) √ 일본뇌염(약동화생백신)	√ Td(파상풍/디프테리아) √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 Hib(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폐렴구균 √ A형간염 √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 Flu(인플루엔자) √ DtaP-IPV/Hib(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 로타바이러스(RV) 감염증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이란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HPV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출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정보 검색사이트-예방접종 길잡이-국가 예방접종 사업 소개-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정보 검색사이트-예방접종 길잡이-국가 예방접종 사업 소개-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구분	내용
지원 대상	12~17세 여성 청소년
지원내용	√ HPV 예방접종 비용지원(2~3회) √ 전국 보건소 및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가능

어린이 예방접종 완료여부 확인

초등학교·중학교 학생의 감염병 예방접종 완료여부 검사

▪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를 검사한 후 이를 교육정보 시스템에 기록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제10조제1항).

▪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위에 따른 검사결과 예방접종을 모두 받지 못한 입학생에게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해야 하며, 필요하면 관할 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보건법」 제10조제2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에게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대한 검사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어린이집·유치원 학생의 감염병 예방접종 완료여부 확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수예방접종을 받은 영유아의 예방접종증명서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접종 완료여부에 대한 검사 및 확인 결과를 확인하여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 학생 등이 있으면 그 영유아 또는 학생 등에게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 ※ 그 밖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및 감염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콘텐츠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1.1.2. 감염병 조치방법

감염병 발생 시 조치방법

"감염병"이란?

▪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제5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 감염병을 말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감염병 환자 관리

▪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다음의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제10호).

- 제1급감염병
- 결핵
- 홍역
- 콜레라
- 폴리오
- 수막구균 감염증

> ※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에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질병관리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치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치료 또는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 입원치료 대상자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 감염병의심자

등교 중지 또는 학교의 휴업 등

▪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학교보건법」 제8조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항).

구분	내용
대상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 ※ 다만, 의사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우려가 없다고 진단한 사람은 제외함 √ 위에 해당하지 않은 환자로서 의사가 감염성이 강한 질환에 감염되었다고 진단한 사람
등교중지	사유와 기간을 학교의 장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 ※ 다만, 질환증세 또는 질병유행의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 교육부장관은 감염병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해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등교를 중지시킬 것을 학교의 장(이 경우 해당 학교의 관할청을 경유해야 함)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학교보건법」 제8조제2항).

- 「검역법」 제2조제7호·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검역감염병의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된 사람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 그 밖에 학교 내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해 등교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위에 따른 명을 받은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해 지체 없이 등교를 중지시켜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제8조제3항).

▪ 학교의 장은 감염병 예방과 학교의 보건에 필요하면 휴업을 할 수 있다(「학교보건법」 제14조제1항).

▪ 관할청은 감염병 예방과 학교의 보건에 필요하면 해당 학교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학교보건법」 제14조제2항 본문).

※ 다만, 교육부장관은 국립유치원 및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그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학교보건법」 제14조제2항 단서 및 제2조제3호가목).

√ 학년 또는 학교 전체에 대한 휴업 또는 등교수업일 조정

√ 휴교(휴원 포함)

▪ 위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조치를 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동의를,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제14조제3항).

> ※ 그 밖에 감염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콘텐츠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1.2. 어린이 건강검사 등

1.2.1. 6세 이상 어린이 건강검사

6세 이상 어린이 건강검사

어린이 건강검사 실시

▪ 학교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어린이에 대해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기 위해 건강검사를 실시합니다(「학교보건법」 제7조제2항 및 「학교건강검사규칙」 제12조).

- 초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

  ※ 다만, 구강 검진은 전 학년에 대해 실시함

- 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학생
- 「학교건강검사규칙」 제12조에 따른 유치원 원아

▪ 건강검사는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정신건강 상태 검사 및 건강검진으로 구분합니다(「학교건강검사규칙」 제3조제1항).

어린이 건강검사 항목 및 방법

▪ 어린이 건강검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합니다(「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5조 및 제7조제1항·제2항·제5항).

구분	검사방법
신체의 발달상황	√ 키와 몸무게 측정 √ 검사방법: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1 ※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는 매 학년도 제1학기 말까지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음
건강조사	√ 병력, 식생활 및 건강생활 행태 등 √ 검사방법: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1의2 ※ 건강조사는 매 학년도 제1학기 말까지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음
정신건강 상태 검사	√검사방법: 설문조사 등의 방법(시행과 그 결과처리는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음) √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동의 없이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검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학부모에게 미리 알려야 함
건강검진	√척추, 눈·귀, 콧병·목병·피부병, 구강 및 병리검사 등에 대해 검사 또는 진단 √검사방법: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2
신체능력검사	√ 대상: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 √필수평가: 신체의 능력등급을 판정 √선택평가:신체활동에 대한 인식정도 등 필수평가에 대한 심층평가 √검사방법: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3

▪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 외에 학생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별도의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학교보건법」 제7조제3항 및 「학교건강검사규칙」 제6조).

검사항목	검사대상
소변검사 및 시력검사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결핵검사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구강검사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건강검사 이후의 조치사항

▪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의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에 대해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제11조제1항).

▪ 학교의 장은 정신건강 상태를 검사한 결과 필요하면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제11조제2항).

- 학생·학부모·교직원에 대한 정신건강 증진 및 이해 교육
- 해당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
- 해당 학생에 대한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 연계
- 그 밖에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

1.2.2. 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 영유아건강검진은 영유아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검진항목	검진방법
문진과 진찰	√ 문진표 √ 진찰 √ 청각 및 시각문진 √ 시력검사 √ 귓속말 검사 √ 예방접종확인
신체계측	√ 키 √ 몸무게(체질량지수) √ 머리둘레
건강교육	√ 안전사고예방 √ 영양 √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 √ 구강 √ 대소변 가리기 √ 전자미디어노출 √ 정서 및 사회성 √ 개인위생 √ 취학전 준비 √ 수면
발달평가	√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를 통한 평가 및 상담
구강검진	√ 구강문진표 및 진찰 √ 메뉴얼을 이용한 보호자 및 유아 구강보건교육

▪ 영유아건강검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각 1회 실시합니다(「건강검진 실시기준」 제8조제2항).

▹ 영유아건강검진 시기

구분	실시시기
1차 검진	생후 14~35일
2차 검진	생후 4~6개월
3차 검진	생후 9~12개월
4차 검진	생후 18~24개월
5차 검진	생후 30~36개월
6차 검진	생후 42~48개월
7차 검진	생후 54~60개월
8차 검진	생후 66~71개월

▹ 영유아구강검진 시기

구분	실시시기
1차 검진	생후 18~29개월
2차 검진	생후 30~41개월
3차 검진	생후 42~53개월
4차 검진	생후 54~65개월

※ 영유아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검사방법은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3. 어린이 치료비 지원

어린이 암 치료 의료비 지원

어린이 암 치료 의료비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

▪ 어린이 암환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치료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암관리법」 제13조제1항, 「암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별표 1 및 『2026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안내』 참조].

<table>
<tr><th>구분</th><th>기준</th></tr>
<tr><td>지원대상</td><td>√ 등록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인 사람
√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이 해당금액 이하인 사람
※ 외국 국적인 사람(난민협약에 따른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제외) 및 국외이주자는 지원받을 수 없음</td></tr>
<tr><td>소득기준</td><td>가구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table>
<tr><td>1명</td><td>2명</td><td>3명</td><td>4명</td></tr>
<tr><td>3,077,086원</td><td>5,039,150원</td><td>6,430,843원</td><td>7,793,686원</td></tr>
<tr><td>5명</td><td>6명</td><td>7명</td><td>8명</td></tr>
<tr><td>9,068,063원</td><td>10,267,142원</td><td>11,418,180원</td><td>12,569,218원</td></tr>
</table>
※ 8명 이상 가구의 경우, 1명 증가 시마다 1,151,038원씩 증가</td></tr>
<tr><td>재산기준</td><td>가구의 재산기준이 다음 이하인 사람
<table>
<tr><td>1명</td><td>2명</td><td>3명</td><td>4명</td></tr>
<tr><td>370,791,022원</td><td>417,842,935원</td><td>451,216,863원</td><td>483,898,935원</td></tr>
<tr><td>5명</td><td>6명</td><td>7명</td><td>8명</td></tr>
<tr><td>514,459,540원</td><td>543,214,446원</td><td>570,817,266원</td><td>598,420,086원</td></tr>
</table>
※ 8명 이상 가구의 경우, 1명 증가 시마다 27,602,820원씩 증가</td></tr>
<tr><td>지원암종</td><td>√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 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 질병분류는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td></tr>
</table>

어린이 암 치료지원 범위 등

- 어린이 암치료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안내』 23-25면 참조).
  - 법정본인부담 의료비,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및 희귀의약품 구입비
  - 조혈모세포 이식 관련 의료비 및 암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인공뼈, 인공안구, 인공삽입물 및 제대혈 등)
  - 암 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치과 의료비 및 치과 보철치료비, 합병증 관련 의료비
  - 항암 치료 부작용 중 탈모로 인한 가발 구매비 등

※ 그 밖에 어린이 암 치료 의료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6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암 치료 의료비 지원 한도액

▪ 소아·아동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

- 백혈병: 연간 최대 3천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백혈병 이외의 암종: 2천만원(다만,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경우 3천만원)까지 지원

※ 소아·아동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는 18세에 도달하는 연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

※ 그 밖에 암 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암 예방 및 치료 지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어린이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18세 미만인 어린이는 다음의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습니다(『2026 의료급여 사업안내』 102면-103면 참조).

- 입원비용
- 외래진료비용
- 약국의 본인부담금

구분	본인부담금
처방조제	500원
직접조제	900원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처방전	없음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발부한 처방전에 따른 처방조제	없음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이지만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 또는 재의뢰된 의료기관에서 처방된 처방전에 따른 처방조제	500원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급여비용 총액의 3%

※ 그 밖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6 의료급여 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어린이 의약품

2.1. 의약품 등의 확인방법

2.1.1. 의약품 확인방법

의약품 확인방법

"의약품"이란?

- “의약품”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합니다(「약사법」 제2조제4호).
  -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 의약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약사법」 제2조제9호·제10호·제18호·제19호).

구분	내용
일반의약품	·오용·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질병 치료를 위해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의약품의 제형(劑型)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
희귀의약품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적용 대상이 드문 의약품으로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
국가필수의약품	질병 관리 및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의약품

의약품에 표시된 기재내용 확인

-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약사법」 제56조제1항 본문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제1항·제10항).
  -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와 주소(위탁제조한 경우에는 제조소의 명칭과 주소 포함)

- 제품명
-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 중량 또는 용량이나 개수
- 대한민국약전에서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정한 사항
- 「약사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기준이 정해진 의약품은 그 저장 방법과 그 밖에 그 기준에서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정한 사항
-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유효 성분의 분량(유효 성분이 분명하지 않은 그 본질 및 그 제조방법의 요지) 및 보존제의 분량

  ※ 다만, 보존제를 제외한 소량 함유한 다음의 성분 등은 제외할 수 있음

  √ 보존제를 제외한 소량 함유 성분

  √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성분 중 원료약품(원자재) 및 그 분량에 기재된 원료명 이외의 성분으로서 별도 규격 등으로 정하는 성분
-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문자
- 용법·용량, 그 밖에 사용 또는 취급할 때에 필요한 주의 사항
-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의약품은 대한민국약전에서 의약품의 첨부 문서 또는 그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정한 사항
- 「약사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기준이 정해진 의약품은 그 기준에서 의약품의 첨부 문서 또는 그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정한 사항

  ※ 다만, 「약사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약품에 첨부하는 문서 대신 전자적 방법 등으로 그 내용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표기되는 바코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음(의약품에 첨부하는 문서 대신 그 내용을 전자적 방법 등으로 제공한다는 문구를 용기나 포장에 적어야 함)
- 성상(性狀)
- 효능·효과(전문의약품의 경우 첨부 문서에 기재되었을 때에만 생략할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제품의 명칭,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등은 점자표기를 병행할 수 있음)
- 저장방법
- 모든 제조공정을 위탁제조하거나 원료칭량(稱量)·포장공정을 제외한 모든 공정을 위탁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기재방법은 위탁자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자는 "제조의뢰자"로, 수탁자는 "제조자"로 함)
- 수입품 또는 수입하여 소분한 경우 생산국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기재방법은 수입 또는 소분한 자는 "수입자" 또는 "소분제조자"로, 생산국 제조자는 "제조자"로 함)
- 규격품 한약의 경우 "규격품"이라는 표시와 원산지명(국가명 등)
- 낱알모음하여 한 알씩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하는 경우 낱알모음포장에 제품의 명칭,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유효기한

  ※ 다만, 사용기한 또는 유효기한은 기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월로 표시할 수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

- 동물에서 유래된 성분(첨가제를 포함)을 사용하는 경우 그 성분명, 기원 동물 및 사용부위

  ※ 다만, 빈 캡슐 등 제조공정상 소해면상뇌증의 감염 우려가 없는 품목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오·남용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인 경우 "오·남용우려의약품"이라는 문자
- 타르색소를 사용하는 경우 그 명칭
-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인 경우 포장단위마다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이라는 문자

의약품 기재사항 위반자에 대한 제재

▪ 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약사법」 제96조제4호).

2.1.2. 의약외품 확인방법

의약외품 확인방법

"의약외품"이란?

▪ “의약외품(醫藥外品)”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합니다(「약사법」 제2조제7호).

-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輕減)·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않으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 감염병 예방을 위해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 ※ 의약외품의 세부품목은 「의약외품 범위 지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약외품에 표시된 기재내용 확인

▪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약사법」 제65조제1항 본문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4조제2항·제3항).

- 의약외품의 명칭
-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 용량 또는 중량(「약사법」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용량 또는 중량이나 개수)
- 제조 번호와 사용기한
-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 다만, 보존제를 제외한 소량 함유한 다음의 성분은 제외할 수 있음

  √ 보존제를 제외한 소량 함유 성분

  √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성분 중 원료약품(원자재) 및 그 분량에 기재된 원료명 이외의 성분으로서 별도 규격 등으로 정하는 성분

- 「약사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기준이 정해진 제품은 그 저장 방법, 그 밖에 그 기준에서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정한 사항

- "의약외품"이라는 문자
- 효능·효과
- 용법·용량
- 저장방법
- 사용상의 주의사항
- 동물에서 유래된 성분(첨가제를 포함)을 사용하는 경우 그 성분명, 기원 동물 및 사용 부위

  ※ 다만, 빈 캡슐 등 제조공정상 소해면상뇌증의 감염 우려가 없는 품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 모든 제조공정을 위탁제조하거나 원료칭량·포장공정을 제외한 모든 공정을 위탁제조하는 경우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위탁자는 "제조의뢰자"로, 수탁자는 "제조자"로 기재함)
- 수입품 또는 수입하여 소분한 경우 생산국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기재방법은 수입 또는 소분한 자는 "수입자" 또는 "소분제조자"로, 생산국 제조자는 "제조자"로 함)
- 금연보조제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다음의 사항

  √ 경고문구

  √ 타르·일산화탄소 등 특정성분에 관한 사항
- 타르색소를 사용하는 경우 그 명칭

▪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 적힌 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약사법」 제65조의2).

▪ 의약외품에 첨부하는 문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약사법」 제65조의3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4조의2).

- 용법·용량, 그 밖에 사용 또는 취급할 때에 필요한 주의사항
-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의약외품은 「대한민국약전」에서 의약외품의 첨부 문서 또는 그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정한 사항
- 「약사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기준이 정해진 의약외품은 그 기준에서 의약외품의 첨부 문서 또는 그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정한 사항
- 의약외품의 명칭
-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 용량 또는 중량
-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다만, 보존제를 제외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할 수 있음)
- 기준이 정해진 제품은 그 저장 방법, 그 밖에 그 기준에서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정한 사항
- "의약외품"이라는 문자
- 사용기한이 지났거나 변질·변패·오염 또는 손상된 의약외품에 대한 교환장소, 연락처 및 교환방법
- 첨부 문서의 작성 연월일 또는 최종 개정 연월일

의약외품 기재사항 위반자에 대한 제재

▪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약사법」 제96조제4호).

2.2. 의약품 등의 안전용기 및 광고

2.2.1. 의약품 등의 안전용기

어린이 의약품 등의 안전용기

어린이 의약품 등의 안전용기 사용

▪ "안전용기·포장"이란 5세 미만 어린이가 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합니다(「약사법」 제2조제13호).

▪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는 자신이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판매할 때에는 오용으로 발생하는 어린이의 약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경구(經口)로 투여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에 대해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해야 합니다(「약사법」 제64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3조제1항).

- 1회 복용량에 30밀리그램 이상의 철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 아스피린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 개별포장(낱알모음포장 또는 1병 단위의 포장 등 소량포장단위를 말함)당 1그램을 초과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 개별포장당 1그램을 초과한 이부프로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 소아용의약품 중 내용액제
- 개별포장당 0.045밀리그램을 초과한 로페라마이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 개별포장당 나프록센 성분이 250밀리그램을 초과한 나프록센 및 그 염류를 함유한 의약품
- 개별포장당 케토프로펜 성분이 50밀리그램을 초과한 케토프로펜 및 그 염류를 함유한 의약품
- 개별포장당 66밀리그램을 초과한 디펜히드라민 및 그 염류를 함유한 의약품

※ 다만,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제외

▪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는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안전용기·포장 등을 해야 합니다(「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3조제2항 및 「의약품 안전용기·포장 및 투약계량기에 관한 규정」 제3조).

구분	내용
1회용 포장	허가(신고)된 용법·용량에 따라 1회 복용량으로 포장 ※ 예: 1회 복용량이 1포 또는 2정인 경우, 1포씩 또는 2정씩 포장
특수포장	특정방향으로 찢어 개봉하는 형태의 포장(tear open) 등 5세 미만의 어린이가 5분 이내에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 또는 고안된 용기나 포장 ※ 예: 마개 위 또는 옆을 눌러서 여는 형태의 포장(push and turn cap), 뒷면 포장을 벗긴 후 앞면을 눌러서 여는 형태의 포장(peel and push), 뒷면 포장을 벗겨서 여는 형태의 포장(peel open), 일정 이상의 힘으로 강하게 눌러서 여는 형태의 포장(hard push)

위반자에 대한 제재

- 어린이의 약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용기·포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약사법」 제95조제1항제10호).

2.2.2. 의약품 등의 광고

의약품 등의 광고

의약품 등의 광고범위

- 의약품 등의 광고 범위와 광고 매체 또는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약사법」 제68조제7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제2항).
  - 신문·방송 또는 잡지
  - 전단·팸플릿·견본 또는 입장권
  - 인터넷 또는 컴퓨터통신
  - 포스터·간판·네온사인·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 비디오물·음반·서적·간행물·영화 또는 연극
  - 방문광고 또는 실연에 따른 광고
  - 자기의 의약품 등의 용기나 포장 또는 다른 상품의 용기나 포장(「약사법」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제65조에 따라 자기의 의약품 등의 용기나 포장 등에 기재된 사항은 의약품등의 광고에 해당하지 않음)
  - 그 밖에 위와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광고해서는 안 됩니다(「약사법」 제68조제6항 본문).
  - 전문의약품
  - 전문의약품과 제형, 투여 경로 및 단위제형당 주성분의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

- 원료의약품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68조제6항 단서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제1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의 예방용 의약품을 광고하는 경우
- 의학·약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하거나 학술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
- 의학·약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전문매체에 광고하는 경우

> ※ 그 밖에 의약품 등의 광고 준수 사항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등의 과장광고 금지

- 의약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효능이나 성능에 대해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지 못 합니다(「약사법」 제68조제1항).
- 의약품 등은 그 효능이나 성능에 대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하지 못 합니다(「약사법」 제68조제2항).
- 의약품등은 그 효능이나 성능을 암시하는 기사·사진·도안, 그 밖의 암시적 방법을 사용하여 광고하지 못 합니다(「약사법」 제68조제3항).
- 의약품에 대해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은 사용하지 못 합니다(「약사법」 제68조제4항).
- 「약사법」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의약품 등의 명칭·제조 방법·효능이나 성능에 대해 광고하지 못 합니다(「약사법」 제68조제5항).

의약품 등의 광고 심의

- 의약품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여 광고하려면 광고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약사법」 제68조의2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9조제1항).
  - 신문·인터넷신문 및 정기간행물(다만, 의학·약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하거나 학술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는 제외)
  - 텔레비전방송과 라디오방송
  - 인터넷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매체 또는 수단
- 다만, 광고신청인이 광고신청인의 상호, 허가 또는 신고한 제품명 및 의약품의 효능·효과와 용법·용량만을 신문·인터넷신문 및 정기간행물에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광고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할 수 있습니다(「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9조제2항).

※ 위의 광고신청인이 의약품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광고심의기관에 알려야하며, 이 경우

광고심의기관은 해당 광고가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광고신청인에게 해당 광고의 심의를 받을 것을 알려야 합니다(「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9조제3항).

위반자에 대한 제재

- 의약품 광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약사법」 제95조제1항제10호).

3. 어린이 화장품

3.1. 화장품의 확인방법 등

3.1.1. 화장품 확인방법

화장품 확인방법

"화장품"이란?

▪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합니다(「화장품법」 제2조제1호).

화장품에 표시된 기재내용 확인

▪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표시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10조제1항 본문·제2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6항 및 별표 4).

구분	기재·표시사항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1차 포장	√ 화장품의 명칭 √ 영업자의 상호 √ 제조번호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다만, 소비자가 화장품의 1차 포장을 제거하고 사용하는 화장비누는 제외
1차 포장만으로 구성되는 화장품의 외부 포장과 1차포장에 2차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외부 포장	√ 화장품의 명칭 √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해당하는 성분은 제외) √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 제조번호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가격 √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기능성화장품을 나타내는 도안으로서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하는 도안 √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코드 √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심사받거나 보고한 효능·효과, 용법·용량 √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그 성분명과 함량(방향용 제품은 제외) √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이 들어있는 경우 그 함량 √ 화장품에 천연 또는 유기농으로 표시·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원료의 함량 √ 수입화장품인 경우에는 제조국의 명칭(「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조국의 명칭을 생략할 수 있음), 제조회사명 및 그 소재지 √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 √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임을 특정하여 표시·광고하려는 경우 「화장품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기준이 지정·고시된 원료 중 보존제의 함량

▪ 다만, 내용량이 소량인 화장품의 포장 등에는 화장품의 명칭,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해야 함)만을 기재·표시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10조제1항 단서).

※ 1차 포장 및 2차 포장의 개념

√ "1차 포장"이란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를 말합니다(「화장품법」 제2조제6호).

√ "2차 포장"이란 1차 포장을 수용하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재 및 표시의 목적으로 한 포장(첨부문서 등을 포함)을 말합니다(「화장품법」 제2조제7호).

화장품 기재사항 위반자에 대한 제재

▪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 및 첨부문서에 기재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장품법」 제38조제2호).

3.1.2. 화장품 원료확인

화장품 원료확인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확인

▪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4조).

구분	표시사항
사용할 수 없는 원료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 위 원료 외의 보존제 및 자외선 차단제 등은 사용할 수 없음

위반자에 대한 제재

▪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 는 알선·수여를 포함)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장품법」 제15조제5호 및 제36조제1항제3호).

3.2. 화장품 안전용기 및 광고

3.2.1. 화장품 안전용기

화장품 안전용기

어린이 화장품 안전용기·포장

▪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화장품을 판매할 때에는 어린이가 화장품을 잘못 사용하여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9조제1항·제2항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 아세톤을 함유하는 네일 에나멜 리무버 및 네일 폴리시 리무버

- 어린이용 오일 등 개별포장 당 탄화수소류를 10퍼센트 이상 함유하고 운동점도가 21센티스톡스(40℃ 기준) 이하인 에멀션 형태가 아닌 액체상태의 제품
- 개별포장당 메틸 살리실레이트를 5퍼센트 이상 함유하는 액체상태의 제품

※ 다만, 일회용 제품, 용기 입구 부분이 펌프 또는 방아쇠로 작동되는 분무용기 제품 및 압축 분무용기 제품(에어로졸 제품 등)은 제외함

▪ 안전용기포장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으나,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는 어렵게 된 것이어야 합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전단).

위반자에 대한 제재

▪ 화장품 안전용기·포장을 하지 않고 제조·판매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장품법」 제37조제1항).

※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37조제2항)

3.2.2. 화장품 광고

화장품 광고

화장품 광고범위

▪ 화장품의 표시·광고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별표 5 제1호).

- 신문방송 또는 잡지
- 전단·팸플릿·견본 또는 입장권
- 인터넷 또는 컴퓨터통신
- 포스터·간판·네온사인·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 비디오물·음반·서적·간행물·영화 또는 연극
- 방문광고 또는 실연(實演)에 따른 광고
- 자기 상품 외의 다른 상품의 포장
- 그 밖에 위의 매체 또는 수단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에 대한 안전·품질 입증의무

▪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제품별로 안전과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의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모두 미리 작성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4조의2제1항·제4항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1항).

- 제품 및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
-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
- 제품의 효능·효과에 대한 증명 자료

> ※ 영유아와 어린이의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 영유아: 3세 이하

· 어린이: 4세 이상부터 13세 이하까지

▪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보관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4조의2제1항·제4항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2항).

▹ 화장품의 1차 포장에 사용기한을 표시하는 경우: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광고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제조·수입된 제품의 사용기한 만료일 이후 1년까지의 기간

※ 이 경우 제조는 화장품의 제조번호에 따른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수입은 통관일자를 기준으로 함

▹ 화장품의 1차 포장에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경우: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광고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제조·수입된 제품의 제조연월일 이후 3년까지의 기간

※ 이 경우 제조는 화장품의 제조번호에 따른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수입은 통관일자를 기준으로 함

화장품 부당광고 금지

▪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화장품법」 제13조제1항).

▹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

▹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화장품의 표시·광고의 범위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화장품법」 제13조제2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별표 5 제2호).

▹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효과 등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효과 등에 대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의·약 분야의 전문가가 해당 화장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 다만, 화장품, 기능성화장품의 정의에 부합되는 인체 적용시험 결과가 관련 학회 발표 등을 통해 공인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관련 문헌을 인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용한 문헌의 본래 뜻을 정확히 전달해야 하고, 연구자 성명·문헌명과 발표연월일을 분명히 밝혀야 함

▹ 외국제품을 국내제품으로 또는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 외국과의 기술제휴를 하지 않고 외국과의 기술제휴 등을 표현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표시·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만을 표시·광고해야 하며, 배타성을 띤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의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 품질·효능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하거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도안·사진 등을 이용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임을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한다고 의심이 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위반자에 대한 제재

▪ 화장품의 부당광고 및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장품법」 제37조제1항).

※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37조제2항)

※ 그 밖에 화장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화장품』 콘텐츠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4. 어린이 학교환경

4.1. 학교의 위생 및 환경관리

4.1.1. 학교 환경위생 관리

학교 환경위생 관리

학교 환경위생 유지·관리

▪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체육장, 교사·체육관·기숙사, 급식시설 및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함]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을 다음과 같이 적절히 유지·관리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제4조제1항,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2까지).

구분	내용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공기 질 등의 유지·관리기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 학교의 장은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위해 각 교실에 다음과 같이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제4조의3 및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

구분	내용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기정화설비 √ 실내 공기 중의 분진을 추출하여 모으고 냄새를 탈취하는 기능이 있는 설비로서 내부에 먼지 제거부와 송풍기가 내장되어 있는 설비 √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실의 공기를 정화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	1.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에 부착되어 있는 부속품 형태의 측정기기로서 미세먼지의 농도를 표시하는 기능이 탑재된 측정기기 2. 1. 외의 기기로서 미세먼지의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기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실의 미세먼지를 측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기

학교 환경위생 점검 등

▪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제4조제2항, 제4조의2,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항·제4항, 제4조 및 별표 6).

점검종류	점검시기
일상점검	매 수업일
정기점검	√ 매 학년: 2회 이상 ※ 다만, 별도의 점검횟수 3회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름 √ 공기 질의 위생점검은 상·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실시 √ 공기 질 측정장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매년 2회 이상 점검 -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소급성(遡及性) 확보를 위한 검사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
특별점검	√ 감염병 등에 따라 집단적으로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 √ 풍수해 등으로 환경이 불경하게 되거나 오염된 때 √ 학교를 신축·개축·개수 등을 하거나, 책상·의자·컴퓨터 등 새로운 비품을 학교시설로 반입하여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위의 경우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제4조제2항 후단)

▪ 학교의 장은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 및 보완 조치를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장관이 운영하는 공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제4조제6항).

▪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심각한 유해물질의 지속적 발생의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해야 하고, 교육감은 이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대책을 수립·실행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제4조제7항).

4.1.2. 교육환경 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 교육감은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해야 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8조제1항).

구분	지정범위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의 방지 등을 위한 계도 등을 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 다만, 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의 관리는 보호구역을 설정한 자가 함

▪ 학교 간에 보호구역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 그 중복된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는 다음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이 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

- 상·하급 학교 간에 보호구역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급학교(다만, 하급학교가 유치원인 경우에는 그 상급학교가 함)
- 같은 급의 학교 간에 보호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학생 수가 많은 학교

▪ 위에도 불구하고 학교 간에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 그 중복된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는 절대보호구역이 설정된 학교의 장이 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3항)

금지행위 등

▪ 누구든지 보호구역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해서는 안 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본문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5항).

금지행위 등	
1.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2.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폐수종말처리시설 3. 배출시설·처리시설·공공처리시설 4. 분뇨처리시설 5.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6.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7. 폐기물처리시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19.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20.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21. 체육시설 중 무도학원 및 무도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설은 제외)
8. 가축 사체, 오염물건 및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9. 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개인·가족자연장지와 종중·문중자연장지는 제외)
10. 도축업 시설
11. 가축시장
12. 제한상영관
1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가목8)·가목9) 및 나목7)에 해당하는 업소
14. 고압가스,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이하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은 포함하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
15. 폐기물을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른 장소는 제외)
16.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17.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18.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연초(煙草)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포함함]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22.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경륜·경정법」 제5조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경주장 및 장외매장
23. 사행행위영업
24. 노래연습장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25.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26.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7. 숙박업 및 관광숙박업(「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른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은 제외)
√ 한국전통호텔업
√ 가족호텔업
28.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29.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레미콘 제조업(시멘트와 모래, 자갈 등의 광물성 물질 혼합물에 물을 첨가하여 굳지 않은 상태로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콘크리트용 비내화 혼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30.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등을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31. 카지노업

▪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위. 14.부터 31.까지의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시설 중 14.에 해당하는 시설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해야 합니다. 다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상대보호구역에 위치한 시설은 2019년 12월 3일부터 1년 이내에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 않습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83호) 부칙 제2조].

위반자에 대한 제재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